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4.11.21.>

(앞쪽)

제 호

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

치과기공소	명칭			
	소재지			
개설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	면허 종류		면허번호	

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 • 특별자치도지사 • 시장 • 군수 • 구청장 직인

210㎜×297㎜[인쇄용지(특급) 120g/㎡]

(뒤쪽)

변경사항		
연월일	내용	확인(인)